

울산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38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7. 10. 18. D에게 자신 소유인 충북 음성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8,2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2017. 7. 4. 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소외회사의 직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8. 2. 13. D에게 3~6개월 내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차3911 이행각서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2.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들이 이의하여 진행된 같은 법원 2020가단5920호 사건에서 2020. 12. 8.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D에게 5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2. 6. D에게 판결금 6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D에게 공동하여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2021. 12. 6. D에게 62,5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도 함께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임원, 피고는 직원인 지위에서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동으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지출한 62,500,000원 중 자신의 지분 1/2인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